

**관리대상 화물 수입통관 및
검사체계 개편 시범운영 업무 설명회**

2020. 10. 28.

인천세관 화물검사과

관리대상화물 제도 개요

입항전 적하목록이 제출되면 선별을 통한 관리대상화물 지정 후 하선단계부터 세관봉인 부착하여 검사 개장 전까지 관리하면서 컨테이너검색센터 및 지정장지장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제도



관리대상화물 제도 개요

- 부두직통관제(컨테이너 내장통관) 도입 (1992년 7월)
 - 부두직통관제 시행 전까지는 컨테이너에서 적출한 화물을 보세창고에 장치하여야 수입 신고가 되는 보세창고 장치 통관 원칙 시행
 - 그러나, 급증하는 무역량에 비해, 턱없이 부족한 검사 인력과 창고 부족 등으로 통관까지 3주가 소요 되는 등 특단의 대책 필요
 - 컨테이너에서 화물 적출 없이 통관하는 부두직통관제 시행
- 부두직통관제, 수입검사 생략 확대 후 또 다른 위험 발생
 - 컨테이너 내장통관 이후 컨테이너 단위의 대형 밀수(커튼치기 품명위장) 발생
 - 물량 급증한 영업용 보세창고 출혈경쟁과 밀수범과 결탁(물품 바꿔치기)
- 새로운 관세국경 위험관리 체계 필요
 - 신속한 물류(물류 경쟁력 확보)를 보장하면서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할 수 있는 관세국경 최일선(하선단계)의 화물C/S 필요
 - 하선단계부터 세관 검사시점까지 특별관리, 정밀검사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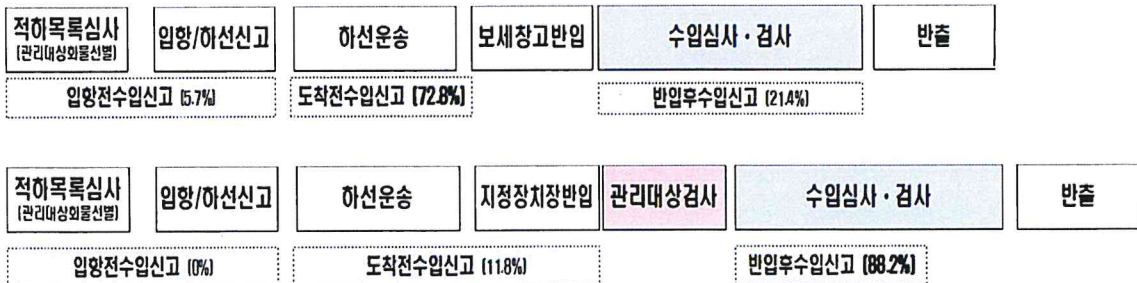
일반 해상 화물 통관 절차



보세구역 도착전에 78.5% 신고완료

- 도착전 신고시 수입통관부서 사전 심사완료-도착후 즉시수리(14.6.)

해상 관리대상 화물 절차



보세구역 도착전에 11.8% 신고완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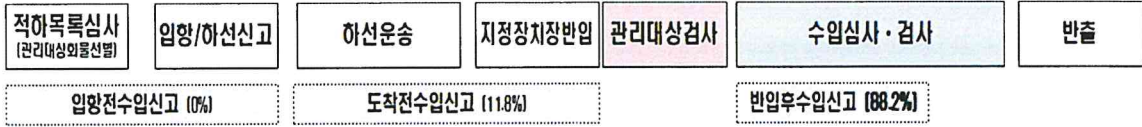
- 관리대상 검사시 수입심사가 불가능 하므로 유인효과 無

관리대상 화물의 구간별 1시간 이내 처리건수 비중

관리해제-신고	수입신고-수리	관리해제-신고수리
1,276건(74%)	856건(50%)	631건(37%)

20.9.1~10.22. 관리대상수입 1,715건 기준

해상 관리대상 화물 절차



관리대상 검사와 수입심사를 동시에 시행

- 관리대상 검사전 수입심사 완료 → 검사 종료시 즉시 신고수리

관리대상 검사이후 1시간 이상 소요되었던 63%건이 즉시수리가능
* 3시간이상으로 확대시 36%건이 검사즉시수리 (당일반출)

해상관리대상 화물 절차

구분	업무프로세스						
일반	적하목록심사 (관리대상화물선별)	입항/하선신고	하선운송	보세창고반입	수입심사·검사	반출	
	입항전수입신고 (5.7%)		도착전수입신고 (72.6%)		반입후수입신고 (21.4%)		
관리대상	적하목록심사 (관리대상화물선별)	입항/하선신고	하선운송	지정장지장반입	관리대상검사	수입심사·검사	반출
AS_IS	입항전수입신고 (0%)		도착전수입신고 (11.8%)		반입후수입신고 (88.2%)		
TO_BE	적하목록심사 (관리대상화물선별)	입항/하선신고	하선운송	지정장지장반입	수입심사·검사 관리대상검사	반출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입심사·검사 및 관리대상검사를 동시에 각각 수입 및 화물검사부서에서 진행 ○ 수입심사대상시 현품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리대상 화물검사부서에 확인의뢰 ○ 수입검사대상의 경우 필요시 화물검사부서에 현품확인 의뢰 ○ 화물검사부서에서 수입심사원료여부 확인 / 관리대상화물 해제등록 - 해제등록 즉시 전산 자동 수리통보 및 반출 						

구분	수입부서	화물검사부서	비고
P/L, 서류제출	이상없음	- 심사결재 등록 - 화물검사시 확인요청사항 등록	- 이상없음 - 관리매제 등록 - 수입부서 및 신고인 정보
	이상발견	- 보완통보 등 - 현품확인 필요의뢰	- 수입부서 현품확인 업조 - 수당, 품명(모범)확인 등
수입검사	- 감면, 세액, 품목분류 등 심사 - 현품확인 필요의뢰		- 수입심사완료시 관리매제 즉시 등록, 신고수리

시범운영 경과 및 계획

- 관리대상 화물 검사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 (20.7월)
- 세부프로세스 및 시범운영 계획 보고 (20.8~9월)
- 수입통관 및 관리대상화물 시스템 개편 (20.10월)
 - 관리검사 동시 수입심사완료 기능 구현 등
- 내외부 관리대상화물 프로세스 개편 설명회 (20.10월)
- 시범운영(11.11~)
 - 인천세관 해상관리대상 화물 우선시행
 - 수입심사 완료 건을 우선검사 및 검사완료
- 전국세관확대(21년 상반기)

협조 부탁 사항

- 신속하고 정확한 수입신고
 - 일반 화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세구역도착전까지 신고
 - 지정장치장 반입시 수입신고완료건을 우선으로 화물 검사진행 및 종결

○ 검사비용 지원제도 적극 활용

(관련근거) 관세법 제173조제3항, 시행령184조의4

· 「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예 관한 고시」 제정·시행(20.7.1)

(기본원칙) 컨테이너화물중 세관검사[㉠]를 위해 예정된 장치 장소에서 세관장이 정한 곳[㉡]으로 강제이동후 시행된 검사

구분	건수(전국인원)	①대상검사	②검사장소
관리대상 화물검사	(72,607/ 25,587)	X-ray검색기검사	컨테이너검색센터
		즉시개장검사	세관지정장치(검사)장
수입검사	(44,615/ 17,982)	부두직통권검사	CFS 등 세관장 지정장소
수출검사	(3,410/ 5,610)	적재지검사	

· 예정된 하선장소에서 실시하는 반입후검사(관리대상화물)는 지급대상 제외

(지원비용) 컨테이너운송료, 상하차료, 적출입료

(제외대상) 고발의뢰 등 검사적발*건

(업무처리) 「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센터」에 업무위탁(자금 제외)

※ 신청문의 : 02-2107-2533 ~ 9 [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센터]

- (신청) 화주(관세사)가 Unipass를 통해 신청(경사일로부터 30일 이내)

· 첨부서류(중소기업확인서, 비운발생 명세서 등)는 전자화문서(PDF)제출의무

- (심사) 지원센터*에서 심사후 지급금액** 결정(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)

· KTCS(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업체)선정, 구로세관2층 사무실 사용

** 지급금액은 소요비용의 약 90% 수준에서 예산범위내